



가 정 통 신 문

54660 전북 익산시 배산로 14길 12-4 <http://www.mohyeon.es.kr>

Iri-Mohyeon
Elementary School
교무실 063)858-2450
행정실 063)858-2452

2023학년도 코로나19 관련 출결관리 안내

유형	등교중지 기간	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(문서, 문자메시지, SNS, 이메일, 사진 등 포함)
확진자	[등교중지] 격리 해제 시까지 (일반적으로 7일)	· 입원·격리 통지서 ·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·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(소견서)
유증상자	[등교중지]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	· 1~2일 차 :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(음성) 보호자 확인서 · 3일 차 :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(소견서) · 4일 차부터 : '치료 기간이 명시된' 의료기관의 진단서(소견서) ※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를 확인하여 출석 인정 처리 가능 * 의사의 진단서·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, 의심증상·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·처방전(치료기간)도 가능
PCR 검사자 (예: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,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,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)	[등교중지 권고] 결과 확인 시까지	· PCR 음성확인서 ·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(소견서)

- ※ 코로나 유증상자에 관련된 증빙자료는 **당일 제출이 원칙**입니다.
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(음성)보호자 확인서는 1일 차, 2일 차 **매일 제출**하셔야 합니다.
코로나 유증상으로 인해 장기결석 시 3일 차, 4일 차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**질병결석 또는 미인정결석** 처리됩니다.
- **(기저질환)** 의사가 인정한 **기저질환**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*를 받고, 등교하지 않은 날은 **출석인정결석** 처리
*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(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)에 기저질환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를 제출해야 하며,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(소견서)로 해당 학기 증빙 가능
※ 기저질환은 '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범위(질병관리청)' 참고, 기저질환을 가진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경우에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
- **(가정학습)**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'가정학습'을 포함하며 2023학년도 허용일수는 30일 (교외체험학습+가정학습= 30일 가능) ※ 추후 의견수렴을 통해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될 수 있음.
- **(코로나19 백신 접종)**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,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~2일은 출석인정결석*,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

<< 증빙 자료 >>

	접종일	접종 후 1~2일	접종 후 3일~
출결	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(결석, 지각, 조퇴, 결과)	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(결석, 지각, 조퇴, 결과)	
증빙자료	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	의사 진단서(소견서), 처방전 등	
①	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. 예)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,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		
②	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,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 처리하며,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		
③	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,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음		

2023. 3. 2.

이 리 모 현 초 등 학 교 장